

대법원 2022. 1. 14 선고 2020다281855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]

재판경과

대법원 2022. 1. 14 선고 2020다281855 판결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10. 7 선고 2019나52401 판결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 8. 20 선고 2018가단5250820 판결

전문

원고, 피상고인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차원 담당변호사 김진우, 하희진

피고, 상고인 (가칭)B지역주택조합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 현

담당변호사 김경태, 김민영, 김우중, 이기영, 홍수임, 백연수

판결 선고 2022. 1. 14.

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10. 7. 선고 2019나52401 판결

주문

상고를 기각한다.

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이 유

상고이유를 판단한다.

원심은,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,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에 따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, 원고가 이를 이유로 위 조합가입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.

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,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,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의 성격, 이행불능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.

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대법관 조재연, 대법관 민유숙, 주 심 대법관 이동원, 대법관 천대엽